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所有·經營構造와 政策對應

劉 承 旻

「오너」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所有·經營構造는 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所有·經營構造의 問題를 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先進資本主義經濟의 所有·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經濟力集中問題를 生産集中, 業種多邊化, 所有集中, 「그룹」式經營方式, 金融機關의 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政府가 추진해 온 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現況과 政策에 관한 並列式 論議를 통하여 과거 出資規制와 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政府의 經濟力集中對策이 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生産 집중, 業種多邊化, 所有 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生産集中과 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所有分散을 중심으로 經濟力集中對策을 再編할 필요성과, 生産集中과 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金融·産業·言論 등 주요부문간 多邊化에 관한 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經營構造에 관한 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所有와 經營의 分離 및 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政府가 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I. 序：問題의 提起

企業組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企業集團은 特定人에게 所有와 議決權이 집중된

筆者 本院 研究委員

* 筆者는 本稿의 모든 내용이 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韓國開發研究院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本論文의 草稿에 대하여 유익한 論評을 주신 本院의 李奎億, 南逸聰, 成素美 博士와

「오너」(owner) 支配體制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 및 그 핵심문제인 기업집단의 所有·支配·經營構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평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¹⁾. 즉, 경제력 집중 및 「오너」지배체제를 自由競爭과 ‘資本의 自己運動’에 따른 自然發生的 現象으로 보는 시각과 政府의 成長優先戰略 및 差別的·保護的 制度環境의 所産이라고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²⁾. 이러한 논의를 보다 상세히 음미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考證하는 일도 중요하겠으나, 대립

되는 의견의 是非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논의를 客觀化 혹은 計量化하여 證據를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과거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概念과 視角의 定立 및 現位置에 대한 分析을 토대로 向後 發展方向과 이를 위한 政策對應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오너」支配體制의 問題點

현재와 같은 企業集團의 所有集中과 「오너」支配體制의 企業조직이 방치될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先進資本主義國家로 발돋움함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企業의 所有·支配構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본다. 첫째, 현재와 같은 「오너」支配體制下에서는 企業成長이 財閥이라는 특정가족의

성장과 동일시되어 무엇보다도 國民經濟에 대한 企業成長의 寄與가 의문시되며, 自由企業主義에 대한 국민일반의 지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政治經濟的 理由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經濟社會의 葛藤構造가 필요 이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勞使問題가 경영자와 노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너」(자본가)와 노조간의 문제가 되어 非效率이 초래되기도 하며, 또한 재벌기업의 경우 企業公開와 所有分散의 부진으로 재벌에 의한 富의 偏在와 世襲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分配的 正義의 문제와 衡平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財閥問題로 농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기업집단에 의한 效率性增大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個別企業集團의 私的 效率性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며, 그 부정적 효과로서 기업집단 자체의 非效率뿐만 아니라 外部效果로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즉, 商品市場과 要素市場에서 기업집단이 갖는 優越的 地位가 實質的 要因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資源配分을 왜곡하고, 기업집단 특유의 거래행태가 創意的 企業을 도태시켜 競爭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집단의 外部借入에 의한 資金調達方式과 계열기업간의 資本結合關係는 退去障壁을 형성하거나 連鎖倒産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적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과거 開發過程의 產物인 「오너」支配體制의 企業組織에 대한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조직을 유도하고, 형평의 증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人的資源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韓國資本主義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원고정리에 수고해 주신 孫玄德 研究員, 任贊順, 吳永淑 研究助員께 감사드린다.

- 1) 原因과 評價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李奎億·李在亨(1990, pp. 62~75) 및 姜哲圭·崔廷杓·張志祥(1991, pp. 21~41) 등을 비교·참조할 것. 所有(ownership)와 支配(control)의 概念問題에 대해서는 Herman(1981, pp. 1~52), 北原勇(1984, pp. 1~32) 등을, 그 論議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正木久司(1983)를 참조할 것.
- 2) “대부분의 企業集團이 政府의 保護와 誘引 아래 근로자·소비자·독립중소기업의 不利益을 초래하면서 외채·은행융자 등 他人資本을 이용하여 獨占利潤을 획득하고, 이를 高收益이 보장되는 非生産的 部門에 투자함과 아울러 政府政策이 私益에 부합되도록 유도하여 왔다”는 式의 비판은 논리의 비약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국민일반에 확산되어 온 과정은 원인과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결국 우세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특히 所有·支配·經營에 관한 기업조직상의 특성은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양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방향의 설정은 韓國資本主義의 發展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2. 經濟力集中과 所有集中 : 概念의 問題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을 보는 視角이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제력집중의 원인과 성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 있겠으나, 概念上的 混亂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식의 대립과 개념상의 혼란이 그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個人的 價値判斷과 客觀的 事實의 구분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 긴장감과 經濟·政治體制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경제력집중문제를 政治·社會問題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순수히 경제적인 논리에 추가하여 국민인식의 평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고려 이전에 經濟論理의 檢討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經濟力集中의 概念부터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經濟力集中(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은 경제적 자원과 수단을 '所有·支配'함에 따라 발생하는 '經濟力'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되어 이들이 다른 경제주체의 선택과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상태를 지칭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는

경제력집중은 '特定人이 支配하는, 多數의 企業으로 구성된' 大規模企業集團, 즉 財閥이 國民經濟의 큰 비중을 점유하는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문제는 企業集團 혹은 財閥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처럼 경제력집중을 여러 시장에 걸친 다수의 獨寡占大企業들이 소유관계로 결합된 기업집단의 문제로 정의할 때, 이는 ① 개별 시장에서의 生産集中, ② 여러 시장에 걸친 業種多邊化 및 ③ 所有集中이라는 세가지 구체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本稿의 주제인 所有·經營構造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이같은 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이 모두 관련되므로 소유·경영구조에 관한 논의는 결국 경제력집중에 관한 논의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

경제력집중의 세가지 측면은 반드시 상호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각 재벌문제의 상이한 차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論理的 定義가 현실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부분적 측면만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財閥=大企業'이라는 인식은 生産集中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소위 말하는 '문어발式 擴張'이란 業種多邊化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경제력집중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빈부격차와 부동산투기 등 모든 經濟社會惡을 제공한 원인으로서 경제력집중을 보는 시각 또한 企業集團에 국한된 인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왜곡된 것이다.

3. 研究方法의 摸索

本稿에서 經濟力集中 및 所有·經營構造의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용된 방법은 단순하다. 우선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여 소유·경영구조의 문제가 경제력집중문제의 일부로 파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先進資本主義經濟의 다양한 소유·경영구조를 참고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소유·경영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經驗的 證據는 본 논문의 결론부분에서 經濟力集中問題에 관한 시각을 제시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概念과 論點의 정리를 통한 論理의 並列的 記述, 외국사례의 인용 및 우리나라 현황의 분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구방법은 단순하고 원시적인 것인만큼 短點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논리전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長點을 갖고 있다. 또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本稿에서는 필요한 統計數値를 要約表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精巧한 假說檢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概括的 考察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순한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本研究은 경제력집중 및 소유·경영구조에 관한 試論的 研究일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의 量과 質을 고려할 때 재벌문제에 대한 중요한 諸假說을 精緻한 計量技法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을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새로운 가설의 개발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制度 혹은 政策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本稿에서는 並列式 記述方式을 고수하고 있다. 즉, 제도현황을 나열·평가하고 本稿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며 문제점에 대한 筆者 나름대로의 시각을 제시한 뒤에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렬식 논리전개의 단점은 政策間 優先順位를 內生的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II. 先進資本主義經濟의 企業所有·經營構造

自由市場經濟와 資本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특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기업조직형태를 발전시켜 왔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個人이나 그 家族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個人資本主義' 내지는 「오너」支配體制가 계속 유지된 경우는 없다. 일본은 '分散型 法人資本主義'라고 불릴 정도로 法人 상호간에 소유하는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종업원 출신의 경영자가 갖는 경영권은 안정적이다. 미국 또한 특정가족의 대기업 지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經營者資本主義'라고 할 만큼 專門經營人의 위치가 확고하며 理事會가 경영권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은 金融機關이나 持株會社를 통하거나 혹은 公企業形態를 통하여 경영은 자율책임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유는 국민에게 분산되고 경영성

과도 국민에게 환원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유·경영구조 또한 개인이나 특정가족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個人資本主義時代를 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經營者資本主義', '金融資本主義' 혹은 '分散型 法人資本主義' 등의 代案 중 어느 模型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大衆資本主義'(people's capitalism)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日 本

가. 6大企業集團의 國民經濟的 比重

1987년의 경우 일본의 6大企業集團의 社長會 會員社數는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

사를 제외하면 163社로서 금융업을 제외한 全法人企業(192萬 9,754社)의 0.006%에 불과하지만 이들 163社는 總資産의 13.28%, 賣出額의 14.68%, 資本金의 15.19%를 점유하고 있다³⁾. 6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 및 매출액의 경우 1988년까지, 자본금의 경우 1985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추이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⁴⁾. 어쨌든 6대기업집단의 社長會 會員社와 이들 기업이 출자하고 있는 4,960개 子會社(50%이상 출자) 및 6,875개 關係會社(10%이상 50%이하 출자)를 합하면 1987년의 경우 이들의 비중은 총자산의 26.95%, 매출액의 25.20%, 자본금의 32.03%를 차지하고 있어 6대기업집단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3) 李奎億·李在亨(1990), pp. 97~98을 참조할 것. 從業員의 경우 「企業系列總覽」(1991, p. 29)에 따르면 이들 사장회 회원사는 非金融 法人企業 전체의 4.14%(1987년기준)를 점유하고 있어 資本集約的 産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企業系列總覽」(1991), p. 28의 도표를 참조할 것.

5) 李奎億·李在亨(1990), pp. 89~94 참조. 株式所有에 의한 資本的 關係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업집단과 평균 30여개(금융 포함) 회원사 사이의 結合의 강도를 나타내는 '株式相互保有率'은 22.65%, 人的 結合關係를 나타내는 '派遣任員比率'은 7.13%를 나타내고 있다(이상 1987년 6대기업집단 평균임). 이 경우 株式相互保有率과 派遣任員比率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株式相互保有率 = (各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 各社의 發行株式總數中 他會員社所有株式數의 占有率의 合計) / (各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社數); 派遣任員比率 = (同一企業集團의 會員社인 銀行·商社로부터 派遣되어 있는 任員數) / (企業集團會員社의 任員總數).

나. 所有·經營構造와 法人資本主義

일본의 6大企業集團은 각 회원사가 독립성을 가지면서 社長會를 통하여 結合關係를 형성하고 있는데, 結合의 요소로서는 ① 株式所有에 의한 資本的 關係, ② 任員의 兼任·派遣에 의한 人的 關係, ③ 계속적인 去來·融資·技術提携 등에 의한 契約的 關係 등을 들 수 있다⁵⁾. 6대기업집단의 所有·經營構造上的 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의 대기업이 유기적·다각적으로 株式를 相互保有한 가운데 社長은 자기 기업이 소유하는 집단내 他會員社의 株式를 대표하므로 社長會는 사실상 大株主會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社長會는 정보·연락기능 외에 相互支配機構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둘째, 기업집단 회원사간의 資本的 結合은 강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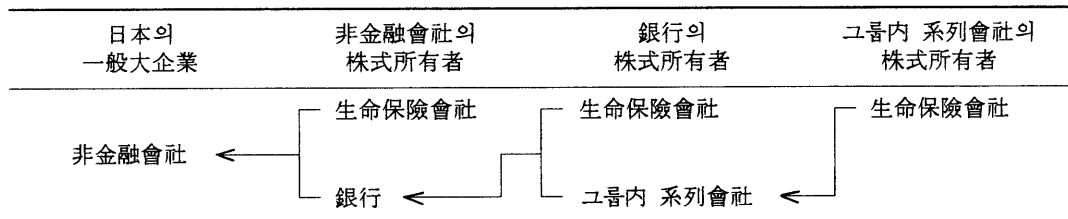
〈表 1〉 日本 上場企業 1~20位 株主의 所有株式分布¹⁾

(단위 : %)

	1985	1986	1987	1988	1989
1~20位 株主의 持分率	41.99	39.99	40.47	40.63	39.32
個人	3.70	2.11	1.69	1.33	0.49
他企業	8.00	8.30	8.20	7.78	7.28
9大商社	0.87	0.77	0.72	0.73	0.72
金融機關	29.42	28.81	29.86	30.79	30.83

註 : 1) 상장기업 전체의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임.
 資料 : 東洋經濟, 「企業系列總覽」, 1991, p. 72.

[圖 1] 日本企業의 株式所有體系



資料 : 西山忠範(1980), p. 47.

않은 편이나 人的·契約的 關係가 강하고, 특히 기업집단단위로 여러 사업분야에 걸쳐 회원사에 의한 共同投資會社가 설립되는 등 공동운명체로서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銀行 및 기업집단내의 保險會社 등이 각 기업집단의 大株主로서 相互保有體系의 中核이 되어 있다.

6대기업집단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日本 上場企業의 주식소유는 상당한 수준까지 분산되어 있다. 所有者別 構成比를 살펴볼 때 個人株主의 비중은 1950년 전후의 70% 수준에서 최근 25% 미만으로 감소하여 株式所有의 大衆化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 대신 10% 미만의 수준이던 金融機關

과 事業法人 등의 비중이 〈表 1〉에서 보듯이 그동안 큰 신장세를 나타내어 현재의 ‘法人資本主義’를 이룬 것이다.

다. 金融機關의 役割과 經營權의 安定的 確保

일본 대기업들의 주식소유분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大株主가 銀行·生命保險會社를 위주로 한 金融機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西山忠範(1980)은 [圖 1]에서와 같이 대기업의 대주주가 주로 생명보험회사와 기업집단내의 회원사이고 회원사의 대주주 또한 생명보험회사이므로 日本 大企業의 大株主는 결국 生命保險會社라고 요약하고 있다. 西山

忠範이 조사한 1978년 일본의 비금융대기업 78社の 경우 금융기관의 持分率이 75%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61개사였으며, 100% 금융기관점유인 기업도 12개사나 되는 반면, 금융기관의 持分이 50% 이하인 기업은 8개사에 불과하였다.

企業支配의 근원을 株式所有에서만 찾는다면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대기업의 궁극적인 지배자는 生命保險會社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西山忠範은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투자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支配 혹은 經營權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일본의 專門經營人은 직장에서의 경력 혹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을 실질적으로 '支配'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경영인에 대한 감시기능은 미국과 같이 會社法上的 메커니즘, 株式市場에서의 價格 메커니즘, '經營者市場'에서의 價格 메커니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대기업간 상호주식보유에 의한 相互保有·支配體制下에서 相互牽制效果와 相互信賴效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집단내의 相互保有·支配構造가 안정적인 한 전문경영인의 경영권 역시 안정적일 것이며, 주식소유가 분산된 상황에서 15~25%의 그룹내 소유비중은 거의 완전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 경영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순수히 기업내에서 内部昇進한 경영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이 또한 경영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服部民夫(1989, p. 255)에 의하면 舊財閥系 3대기업 집단의 경우 경영진의 70~80%(1984년기준)가 내부승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보유·지배구조가 회원사간의 연결조직임에도 불구하고 個別企業經營體制가 어느 정도 확립된 것은 우리나라의 '財閥'과 달리 일본 '企業集團'의 경우에는 垂直的·一方的 意思決定權을 가진 그룹會長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일본의 소유·경영 구조는 「오너」支配體制가 아니면 責任經營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중요한 反證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2. 美 國

가. 大企業의 國民經濟的 比重

미국의 전체 법인회사는 1950년의 62萬 9,000個社에서 1980년에는 271萬 1,000個社로 늘었으나⁶⁾, 전체 제조업에서 上位 100社 혹은 200社가 차지하는 비중은 <表 2>에서 보듯이 동 기간중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所有分散과 經營者資本主義

19세기말 미국 기업들은 合併·引受 등의 擴張戰略을 통하여 大型企業으로 성장했는데, 자금조달에 있어 초기에는 주로 社内留保金과 銀行貸出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주식발행에 의한 直接金融의 비중이 높아졌다. 주식발행이 계속 확대되면서 創業者 또는 그 가족에 의한 私的 株式所有의 비중이 하락

6) Mueller(1987), p. 2 참조. 본문 <表 2>에서는 제조업만을 다루고 있으나 一般集中度의 보다 자세한 논의와 國際比較(미·일·독·캐나다)를 위해서는 Marfels(1988)를 참조할 것.

〈表 2〉 美國 100大 및 200大企業의 比重 (총자산기준, 제조업) : 1955~82년

(단위: %)

	1955	1960	1963	1970	1975	1980	1982
100大	44.3	46.4	46.5	48.5	45.0	46.7	47.7
200大	53.3	56.1	56.7	60.4	57.5	59.7	60.8

資料: Mueller(1987), p. 8.

〈表 3〉 美國 大企業의 私的 所有持分の 變化⁷⁾: 1929~76년, 43個社

1929~76년 기간중 私的 所有持分の '下落率' ²⁾	企業의 數
75%이상 하락	25 (58.1%)
50~75% 하락	12 (27.9%)
25~50% 하락	3 (7.0%)
25%이하 하락	3 (7.0%)
合 計	43(100.0%)

註: 1) 私的 所有란 特정인(창업자 등) 또는 그 家族 들(관련소수집단)에 의한 株式所有를 말함.
2) '下落率'은 지분(%)의 變化율(%)을 계산한 것으로 1929~76년 기간중 私的 所有持分の 최대치와 최소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임.

資料: Herman(1981), p. 78.

하기 시작하였다. Herman(1981)의 연구에 따르면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여년에 걸친 유상증자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초기 대주주들의 持分率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이는 專門經營人에 의한 企業支配形態가 형성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大企業의 株主數 또한 1929년에는 57.0%의 기업이 2萬명 이하였으나 1974년에 이르러서는 69.5%의 기업이 5萬명 이상의 株主를 가질 만큼 株式

所有의 大衆化가 이루어졌다⁷⁾.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는 이미 '經營者資本主義'(managerial capitalism)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세기 중반 이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창업된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創業者經營에 대한 世代交替가 이루어졌고, 경영기술의 전문화추세에 따라 전문경영인의 위치가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超大企業의 경우 10大株主의 持分率은 대체로 10%에 미달되고, 特定家族그룹의 持分率은 계속 하락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외의 수준에 불과하다. 1974년에는 200大企業의 경우 〈表 4〉에서 보듯이 82.5%의 기업이 경영자지배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經營者資本主義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는 〈表 3〉과 〈表 4〉에서 보듯이 오랜 기간을 두고 소유분산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이다.

다. 理事會와 經營權의 安定性

經營者資本主義가 정착됨에 따라 대기업의 실질적인 議決權은 理事會(board of directors; 궁극적으로는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다. 이사회는 대주주인 特定家族·金融機關·會社 등을 대표하는 理事('外部理事': outside directors)와 企業内部로부터의 理事('内部理事': insiders)로 구성된다. 대

7) Herman(1981), p. 71 참조.

〈表 4〉 美國 大企業의 所有·支配構造 · 1900년, 1974년¹⁾

支配形態	所有形態	1900년 40大企業	1974년 200大企業
經營者支配 ²⁾	5%미만의 私的 所有	9.5 (23.8%)	165 (82.5%)
少數株主支配 ²⁾	5~50%의 私的 所有	5 (12.5%)	29 (14.5%)
過半數株主支配	50%이상의 私的 所有	13 (32.5%)	3 (1.5%)
其 他	金融機關에 의한 出資 등	12.5 (31.3%)	3 (1.5%)
合	計	40 (100.0%)	200(100.0%)

註 · 1) 林雄基(1988, pp. 48~49)에서 소개된 Berle and Means(1932, p. 115), Larner(1966, p. 781)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참조할 것.

2) 1900년의 경우 經營者支配는 10%미만의 私的 所有를, 少數株主支配는 10~50%의 私的 所有를 말함.
資料 Herman(1981), pp. 58~62.

기업이사회의 역할은 기업간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체로 外部理事의 경우에도 기업경영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 경영자가 원하는 바를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1930년대 이후 외부이사가 多數를 점하는 企業의 數가 꾸준히 증가한 추세이나, 外部理事 중 상당수가 내부이사 출신이거나 최고경영자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이사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經營權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더구나 내부이사들이 최고경영자의 의도에 충실한 同質的 集團이며 기업내부조직, 생산·기술 및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반면, 외부이사들은 정보가 부족한 異質的 集團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도대로 이사회를 움직이기 용이한 점도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영자에게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誘因이 항상 존재할 것인데, 經營者가

支配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理事選定方法 자체가 경영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이 실현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美國式 經營者資本主義下的 理事會는 대부분 經營者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되는 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기업경영이 대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날 경우에만 理事會 혹은 大株主의 經營權 侵害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라. 金融機關과 大企業의 關係

미국의 경우 證券市場의 발달로 대기업에 대한 金融機關의 支配力이 직접적·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만 일부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4년의 경우 200大企業(非金融)의 82.5%(165個社)에 있어서 은행·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 등 金融機關의 議決權 保有率은 30% 이하이며, 금융기관의 의결권 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1個社뿐이다⁸⁾.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 의

8) Herman(1981), p. 148 참조. 金融機關의 企業支配, 産業資本型 企業集團과 金融資本型 企業集團의 關係 등의 주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가 아닐 수 없

하여 경영권이 지배당하는 사례는 드물고, 다만 대기업은 장래의 합병 등 기업의 擴張戰略에 필요한 信用提高를 위하여 노력하며, 금융기관은 우수한 기업에 대한 金融支援에 있어서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 럽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企業의 所有·經營構造는 국가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으나 대체로 資金調達方法에 있어서 政府, 持株會社 및 金融機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했으므로 資本市場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국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經營者資本主義에 비해서 전근대적인 企業所有·經營構造를 나타낸다.

가. 英 國

영국은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이나 所有構造에 관한 한 영국기업들의 근대화수준은 미국기업들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그 이유로는 市場機能이 일찍 발달하여 企業內部組織의 확대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유통망이 발달하고 카르텔이 오랫동안 허용되어 미국기업들과 같은 前·後方 企業結合에 의한 大企業化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금융시장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과 같은 株式의 大衆化를 거치지 않고서도 기업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

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5년의 경우 224개사의 영국 대기업 중 5%미만의 私的 株式所有로서 經營者支配로 분류될 만한 기업은 98개사(43.8%)였다⁹⁾.

나. 프 랑 스

프랑스는 영국·독일에 비하여 商品·金融市場의 발전이 뒤떨어지고 경영인의 양성에 있어서도 폐쇄적이어서 근대기업의 출현이 늦었다. 산업발전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금융서비스의 결여로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共同出資에 의한 合作企業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합작기업이 少數의 大株主에 의하여 지배당함에 따라 이들이 대규모의 金融持株會社로 발전하고 많은 子會社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持株會社에 의존하는 資金調達方式은 資本市場의 발전을 저해하여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근대기업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1974년의 경우 프랑스의 200大企業 중 50%이상의 私的 株式所有(이 경우 특정가족집단 및 은행에 의한 주식소유)가 43개사, 5~50%의 私的 株式所有가 82개사였고, 5%이하의 私的 株式所有로서 經營者支配로 분류될 만한 기업은 75개사(37.5%)였다¹⁰⁾.

다. 獨 逸

영국, 프랑스에 비하여 産業化가 뒤늦게 시작된 독일의 기업들은 미국기업과 유사한 大型化 成長戰略을 채택하였으나, 所有·經營構造에 있어서는 미국식의 경영자자본주의가 아니라 창업자 및 그 가족에 의하여 지배되는 個人資本主義의 특성을 오랜 기간동안 지속하였다. 독일에서도 카르텔이 허용됨에

다. 이에 대한 외국의 논의는 北原勇(1984), 7章, 8章과 Herman(1981), 4章 등을 참조할 것.

9) 北原勇(1984), p. 166 참조.

10) 林雄基(1988), pp. 54~55 참조.

따라 기업의 조직확대노력과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동기가 위축되며 大株主들의 持分이 계속 유지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資金調達이 주로 銀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자주식회사의 형태로 은행과 유대관계를 가진 결과 은행이 企業經營에 직접 간여하게 되었다. 독일의 株式會社는 전통적으로 監督理事會(supervisory board)와 執行理事會(executive board)로 二元化된 이사회구조를 갖고 있는데, 은행은 감독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집행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소유하였다. 이처럼 주식소유가 특정인 또는 은행에 집중된 金融資本主義의 企業支配狀況에서 株式의 大衆化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Ⅲ. 우리나라의 企業所有·經營構造：現況과 分析

우리나라는 30大企業集團이 鑛工業部門 出荷額의 35.2%(1989년)를 차지하는 등 財閥이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株式所有와 議決權 또한 特定財閥家族에게 집중됨으로써 所有主에 의한 企業支配라는 독특한 企業所有·支配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1.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國民經濟的 比重

가. 企業集團集中度의 推移

〈表 5〉에서 보듯이 30大企業集團에 의한 經濟力集中은 1977년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심화되었으나 1985년 이후부터 다소 완화되

〈表 5〉 鑛工業部門의 大規模企業集團 經濟力集中度 推移

	1977	1981	1985	1987	1989
〈10大〉 出荷額	21.2	28.4	30.2	27.9	27.0
附加價值	20.1	20.4	24.1	23.4	22.7
有形固定資產	-	23.2	27.9	28.6	25.3
雇 傭	12.5	12.1	11.7	11.6	11.8
〈30大〉 出荷額	32.0	39.7	40.2	36.8	35.2
附加價值	29.1	30.8	33.1	31.9	29.6
有形固定資產	-	36.7	39.6	37.9	35.3
雇 傭	20.5	19.8	17.6	17.6	16.6

資料：公正去來委員會；韓國開發研究院.

〈表 6〉 鑛工業部門의 100大企業 經濟力集中度 推移

(단위: %)

	1981	1985	1987	1988	1989
出 荷 額	46.2	43.4	38.5	38.1	37.2
附 加 價 值	40.6	39.0	36.5	34.9	33.5
有形固定資産	48.1	42.9	41.8	40.9	39.2
雇 傭	19.1	17.5	16.3	16.1	15.5

資料: 公正去來委員會.

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물론 雇傭占有率의 경우에는 1985년 이전에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出荷額, 附加價值, 有形固定資産 등의 기준으로 볼 때 10大 및 30大企業集團의 비중은 1985년 부근을 頂點으로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說明·評價함에 있어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經濟成長에 따른 企業數의 증가, 産業底邊의 확대, 獨寡占市場의 競爭化가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이후 企業集團集中度가 하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물론 기업집단의 외형적 확대를 억제하는 出資規制制度, 與信管理制度, 非業務用不動産 處分誘導, 中小企業育成施策, 市場의 競爭化를

겨냥한 政府의 自律化·開放化施策 등도 우리 經濟의 量的·質的 變化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表 5〉에 나타난 經濟력집중도의 변화추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政策效果에 관한 객관적인 計量化에 의한 연구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政府정책에 의한 經濟력집중억제의 純效果를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¹¹⁾.

나. 一般集中도의 推移

10大 및 30大企業集團의 經濟力集中度 推移와는 달리 100大企業의 比重(一般集中度)은 〈表 6〉에서 보듯이 1980년대全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一般集中도의 감소추세 또한 經濟성장 에 따른 기업수의 증가, 産業저변의 확대, 市場의 경쟁화 등의 변화가 진행된 점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表 5〉와 비교해 볼 때 企業集團集中度는 1985년까지 증가추세이나 一般集中度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100大企業 이외에도 기업집단소속 대기업이 많고, 동 기간중 기업집단의 多邊化를 통한 外形擴大가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00大企業(出荷額基準) 중 30大企業集

11) 특히 政府정책 중에는 産業合理化措置, 不況時 大企業支援施策 등의 경우처럼 經濟력집중이 방지 혹은 조장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經濟力集中에 관한 政府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分析對象이 되는 정책의 範圍選定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與信管理制度는 그동안 상당한 기복을 보였고 出資規制制度는 1987년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IV章을 참고할 것.

〈表 7〉 大規模企業集團 銀行與信占有率

	(단위: %)			
	1987년말	1988년말	1989년말	1990년말
· 與信占有率 30大	23.3	19.7	18.3	16.8
(" 5大)	(-)	(11.1)	(8.4)	(7.6)
· 30大系列 貸出占有率	21.6	18.3	14.7	13.5
(여신관리제외대출 ¹⁾ 포함시)	(26.3)	(24.2)	(20.7)	(19.8)
· 30大系列 附加價值比重 ²⁾	13.9	-	14.6	-

註: 1) 1991년 6월 여신관리제도 개편 이전의 여신관리제외대출은 해외지점대출, 연불수출금융, 특별외화대출, 산업합리화관련대출 등임.

2) 全産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表 5〉의 수치와 상이함.

資料 財務部.

團의 系列企業은 1987년의 경우 71개사로서 '대기업은 주로 재벌기업'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30대기업집단은 市場支配的 品目の 75.0%(1989년)에 해당하는 품목을 출하함으로써 각 市場에서 支配的 地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企業集團의 與信占有

우리나라와 같이 資金의 超過需要가 상존하는 경우에는 與信確保가 企業成功의 중요한 必要條件이다. 企業集團은 資金市場에 있어서도 수요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總與信(대출+지급보증) 및 總貸出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表 7〉에서 보듯이 銀行與信占有率에 있어서도 與信管理制度의 강화 등에 따라 30大企業集團의 與信比重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與信管理에서 제외되었던 대출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비중은 높고, 企業集團은 제2금융권, 직접금융 및 계열사간의 자금활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銀行與信占有率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總可用資金에서의 占有率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¹²⁾.

3. 企業集團의 事業領域擴大 (業種多邊化)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에 의하여 지정된 大規模企業集團은 1987년 32개집단 509개사에서 1991년에는 61개집단 915개사로 증가했으나 이 또한 상당부분 經濟規模擴大에 따른 당연한 추세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30大企業集團만을 두고 볼 때에도 계열회사의 數는 1984년 258개사에서 1991년에는 561개사로 꾸

12) 앞서 살펴본 企業集團集中度와 一般集中度 등이 鑛工業部門에만 국한된 통계상의 문제를 가지듯이, 與信占有率 또한 銀行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총여신(대출)에 관한 통계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公正去來委員會의 비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企業集團의 第2金融圈與信占有率(1990년 11월말)은 5大 17.07%, 30大 43.6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表 8〉 30大企業集團의 平均出荷品目數： 製造業, 1987년

(단위: 個)

	1~5大	6~10大	11~15大	16~20大	21~25大	26~30大	平均
企業集團當 平均出荷品目數	130	48	47	32	27	22	51

資料: 李奎億·李在亨(1990), p. 38.

〈表 9〉 製造業 中分類産業別 系列企業의 分布: 1987년

(단위: 社)

企業集團 \ 中分類	31	32	33	34	35	36	37	38	39	計
5大	2	10	2	4	12	4	5	57	1	97
30大	32	39	4	14	55	14	23	99	2	282

資料: 李奎億·李在亨(1990), p. 37.

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이들 기업집단이 이 기간동안 多邊化, 즉 事業領域擴大에 주력해 왔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製造業部門에만 국한시켜 볼 때 30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80년대全般에 걸쳐 260~280개사 정도를 유지해 왔으므로 계열회사의 증가는 주로 非製造業部門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8〉에서 보듯이 1987년 30大企業集團은 製造業部門에서만 평균 51개의 품목을 생산하며, 특히 5大企業集團의 경우 평균 130개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5大企業集團의 다변화정도가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30大企業集團 系列企業의 製造業 中分類産業別 分布는 〈表 9〉에서와 같이 산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企業集團의 事業領域擴大의 適正水準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企業集團의 内部效率性, 國民經濟的 資源配分의 效率性,

競爭制限性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적 증거 없이 多邊化 혹은 專門化를 주장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쨌든 최근 業種專門化 움직임이 기업집단의 다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4. 企業集團의 所有構造와 所有集中

가. 企業公開度

企業所有構造는 直接金融의 活用可能性, 所有構造의 透明性, 制度的 公開要件 등의 이유로 企業公開與否와 연관성이 높다. 〈表 10〉에서 보듯이 30大企業集團 561社 중 161社만 공개되어 공개비율은 28.7% 수준에 불과하며, 1989~90년중 공개된 162개 기업 중 30大企業集團의 系列會社는 19개사 (11.7%)에 불과하여 기업집단의 기업공개는 매우 부진하다고 판단된다.

〈表 10〉 企業集團의 企業公開度 : 1991년 4월

(단위: 個)			
	系列會社數(A)	公開企業數(B)	B/A (%)
5大	198	64	32.3
30大	561	161	28.7

資料: 公正去來委員會.

〈表 11〉 30大企業集團의 內部持分率

(단위: %)			
	1987. 4	1990. 4	1991. 4
30大 系列企業 ¹⁾	56.2	45.4	46.9
(家族持分率)	(15.8)	(13.7)	(13.9)
(系列會社持分率)	(40.4)	(31.7)	(33.0)

註: 1) 각 계열기업, 각 기업집단의 資本金을 이용한 加重平均임.

資料: 公正去來委員會.

나. 內部持分率

家族持分率(동일인+특수관계인)과 系列會社持分率을 합한 30大企業集團의 內部持分率은 所有集中度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表 11〉에서 보듯이 1991년 4월현재 46.9%라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內部持分率은 1987년 56.2%에서 1990년에는 45.4%로 하락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直接金融이 활발했으며, 1988년 이후 無議決權株式이 대량발행(총발행주식가액의 약 8% 수준)되었던 점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無議決權株式을 제외한 議決權株式의 內部持分率은 46.9%를 상회할 것이다. 물론 이 기간동안 與信管理制度나 出資規制制度가 과다한 系列會社持分率에 대한 규제효과를 통하여 특히 1987~90년간의 내부지분율 하락에 기여했음은 인정되나 1990년의 증시침체에 이은 1991년의 내부지

분율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이러한 政策效果를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46.9%의 內部持分率은 단지 30대기업집단의 평균수준만을 나타내므로 그 내역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表 12〉에 제시된 통계치를 살펴보면 우선 上位 企業集團일수록 평균적으로 더욱 높은 內部持分率을 나타내는 동시에, 개별 기업집단별로 내부지분율이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10〉에서와 같이 기업공개가 부진한 가운데, 공개기업의 경우 內部持分率은 평균적 수준을 훨씬 下廻함을 알 수 있어 企業公開와 所有構造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또한 1991년 6월 개편된 與信管理制度에 따라 각 기업집단이 신청한 88개의 主力業體의 경우(30개 기업은 비공개) 내부지분율은 평균적 수준을 上廻함을 알 수 있다.

〈表 12〉 内部持分率의 構成과 企業特性別 差異 : 1991년 4월 기준

(단위 : %)

	同一人 + 特殊關係人	系列會社	内部持分率 合 計	上場社 ¹⁾ 内部持分率	主力業體 ¹⁾ 内部持分率
30大 ²⁾	13.9	33.0	46.9	32.9	51.0
10大	12.9	35.2	48.1	-	-
5大	13.2	38.4	51.6	-	-
삼 성	8.5	44.7	53.2	26.6	70.9
현 대	27.5	40.3	67.8	42.4	76.4
대 우	9.8	40.6	50.4	19.8	35.3
럭키금성	7.6	30.6	38.3	26.0	42.0
쌍 용	7.6	34.4	42.0	42.1	27.6

註 : 1) 上場社 内部持分率과 主力業體 内部持分率は 1990년말 기준임. 주력업체 내부지분율은 1991년 6월 여신관리제도 개편 이후 1991년 7월현재 신청한 88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함.

2) 上場社 및 主力業體의 경우 30大企業集團의 구성은 전체기업의 경우와 상이함. 後者は 公正去來法에 근거하여 1987년 자산총액기준으로 지정된 29개기업집단임(5大 및 10大도 1987년 기준).

資料 : 公正去來委員會; 上場社 및 主力業體 内部持分率は 「週刊每經」(1991. 7. 10, pp. 29~40)을 참조함.

5. 「그룹」式 經營構造와 企業集團에 의한 競爭制限

經營組織의 측면에서는 系列會社의 經營·人事·資金 등 모든 사항을 그룹차원의 會長秘書室 혹은 企劃調整室이 통제하는 「그룹」中心의 經營體制가 고착화됨에 따라, 個別會社의 獨立經營體制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人力에 있어서 신입사원의 채용에서부터 관리계층의 인사까지 모두 「그룹」중심으로 관리되어 건설·중공업 인력이 백화점인력과 일괄채용·배치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資金 측면에 있어서는 系列會社間 相互支給保證으로 재무상 연계가 심화되어 新規·成長企業에 대한 新規投資가 제약되고 限界企業의 效率的 淘汰(退

出)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可用資源의 效率的 配分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앙집권적 경영조직은 官僚化되기 쉬워 통제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직성이 증가할 것이며 노사대립의 「그룹」내 확산이 쉽게 일어나는 등의 단점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룹」中心의 經營體制이든 個別企業에 의한 專門·獨立經營體制이든 支配權을 행사하는 者의 自律에 맡길 문제이며 효율성에 근거한 논란에 대해 아직도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經營組織의 優劣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經營構造의 문제가 과연 政策問題인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상호지급보증 등의 재무상 연계가 退出障壁을 형성하며 원활한 構造調整을 방해하고 連鎖倒産의 부작용을 갖는다면 최소한 資金配分의 效率性 提高라는 측면에서는 規

〈表 13〉 30大企業集團의 内部去來 : 系列社間 賣出依存度¹³⁾ (1988년)

(단위 : 億원)

企業集團	總賣出額(A)	内部去來(B)	B/A (%)
5大	548, 963	152, 162	27. 7
10大	694, 643	177, 429	25. 5
30大	880, 830	205, 593	23. 3
日本 6大企業集團	-	-	20. 4

註 : 調査對象은 與信管理對象 30大企業集團임. 日本의 경우 1981년 통계임.
資料 : 韓國信用評價(1989); 일본의 경우 李奎億·李在亨(1990), p. 96.

制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與信管理와 出資規制가 이와 어느 정도 관련되지만 재무상 연계에 대한 직접적 규제장치는 없다.

「그룹」식 經營組織의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방식이 자연히 「그룹」내 系列會社間 相互去來(기업집단의 内部去來)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30大企業集團의 系列企業間 賣出依存도는 〈表 13〉에서 보듯이 25% 내외의 수준으로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¹³⁾. 이러한 内部去來는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지만 이에 수반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内部去來는 市場의 確保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企業集團 특유의 濫用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不公正去來行爲는 價格 등의 差別的 取扱, 交互去來(reciprocal dealing), 끼워팔기, 去來拒絕, 去來中斷, 기타 각종 不當한 去

來條件과 垂直的 去來制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競爭制限行爲 이외에도 内部去來는 法人所得에 대한 租稅負擔의 不當한 減少(法人稅法上 不當行爲計算에 해당) 등을 통하여 租稅回避手段으로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徵稅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6. 金融機關의 所有와 經營

이상에서의 논의는 주로 産業에 국한된 것으로서 金融部門은 환경변수로 취급되었으나 先進資本主義의 경우에서 보듯이 企業所有·經營 및 經濟力集中에 관한 한 金融機關의 役割과 産業·金融資本의 關係設定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가. 企業公開

1987년 이후 銀行·證券·短資會社는 대부분 공개되었으나 生命保險會社(1991년 현재 32개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6개 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988년 이후 설립되어 公開要件에 미달되고, 1986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989년부터

13) 内部去來는 輸出入比重이 높은 開放型 品目 보다는 해운·광고·건설·금융·보험 등과 같은 보호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競爭壓力이 낮을수록 内部去來를 통한 相互補助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表 14〉 金融機關 大株主의 持分率：例示(1990년말)

(단위：%)

市中銀行			
조 흥	삼성(6.8), 태광(6.3), 신동아(6.0), 쌍용(2.0)		
한 일	삼성(5.0), 대림(3.4), 럭키금성(2.5), 현대(1.4)		
한 미	대우(5.6), 삼성(5.1), 삼미(1.9), 태평양화학(1.9), 고려합섬(1.4)		
地方銀行			
대 구	삼성(5.5), 코오롱(3.5), 동일산업(2.5)		
부 산	롯데(15.9), 삼남장학회(7.7), 미원(1.4)		
광 주	금호(9.9), 동원산업(3.7)		
강 원	현대(24.1)		
生命保險會社		資本金	運用資産
		(億圓)	(兆圓)
삼 성	신세계(14.5), 제일제당(11.5), 이건희(10.0)	936	9.95
흥 국	이임용(87.0), 이식진(4.0), 이영진(4.0)	5	1.90
동 아	최원석(89.0), 동아건설(7.3), 최원영(1.7)	30	1.26
대한교육	신창재(45.0), 대우(24.0), 신인재(8.0)	686	7.11
대 한	최순영(23.8), 최병억(12.8), 김광평(6.8)	80	3.35

터 공개요건이 충족된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으나 株式市場의 지속적 침체로 공개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1991년 현재 4개사가 공개요건을 달성했으며, 1992년에 2개사(대한교보, 삼성생명)가 공개될 예정이나, 保險會社의 公開 및 公開時 資産再評價 문제는 원칙상 문제보다는 資産再評價利益이 소수의

大株主에게 귀속된다는 절차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生命保險會社의 非公開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¹⁴⁾.

나. 金融産業에 대한 財閥의 進出實態

金融機關의 所有分散實態는 〈表 14〉의 例示에서와 같다. 市中銀行의 경우 민영화(1981.4) 이후 同一人 株式所有上限制(8%) 운용으로 소수의 大企業이 과점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支配株主는 없지만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집단의 주식을 합산할 경우 持分率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第2金融圈의 경우에도 1989년 30大企業集團의 524개 계열회사 중 21개 금융회사(투자금융,

14) 生命保險會社는 대부분 株式會社가 아니라 相互會社 형태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生命保險會社의 株式會社化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최근 大藏省이 생명보험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保險業法의 개정을 통하여 상호회사보다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방침을 정했다. 日本 毎日新聞, 1991.7.22 日字, 「生命保險社의 株式會社化」 참조.

表 15. 一般銀行의 株式保有現況

	(단위: %)		
	1987	1988	1989
株式保有/總資産	0.7	1.1	1.5
株式保有/有價證券保有	8.4	13.1	15.2

資料 金俊經(1991), p. 67.

신용카드 포함), 10개 보험회사, 16개 증권 회사(투자자문 포함) 등 47개의 제2금융권 계열회사가 있으며, 이러한 金融企業들은 企業集團의 업종다변화 및 자금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地方金融機關의 경우 지방은행은 대기업이 과점주주이며, 지방투신은 지방소재기업의 공동출자형태의 소유구조를 나타내는데, 地方銀行의 경우 同一人 所有制限이 없어 大株主持分率이 市中銀行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은행이 企業集團의 株式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극히 미미하여 <表 15>에서 보듯이 一般銀行의 株式保有現況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總資産 및 有價證券保有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IV. 關聯制度·政策의 現況과 評價

1. 經濟力集中問題 全般과 관련된 制度

가. 公正去來法上的 系列會社指定 및 出資規制

財閥企業集團의 經濟力集中問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法制的 접근은 公正去來法으

로서 그동안 2차에 걸친 法改正을 통하여 現行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公正거래법은 資産總額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同一人 또는 特殊關係人(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관련 비영리법인·조합·단체, 이들의 사용인, 이들이 30%이상 출자한 회사)이 회사의 發行株式總數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經營에 대하여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系列會社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株式의 僞裝分散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經營에 影響力을 행사한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의 설정이 곤란하여 사실상 동일인 혹은 특수관계인이 지배하고 있으나 非系列會社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公正거래법의 出資規制制度(1987년 4월 도입)는 대규모기업집단의 系列會社間 直接相互出資를 금지하고 他會社에 대한 出資限度額을 純資産額(自己資本-系列會社로부터 출자받은 금액-國庫補助金)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相互出資禁止措置로 상호 출자금액 851億 원 중 1990년 3월말의 법정기한까지 693億 원의 상호출자가 해소되었으며, 1991년 4월 법정기한까지 158億 원이 모두 해소되었다. 또한 出資總額制限에 따라서 出資

〈表 16〉 大規模企業集團 出資限度超過金額의 解消

(단위 : 億원)

	指定當時 超過金額	1991년 4월현재 超過金額	1991년 4월현재 解消率(%)
1987年指定 企業集團	12,459	2,728	78.1
1988~90年指定 企業集團	4,411	3,157	28.4

資料 · 公正去來委員會.

限度를 초과한 타회사출자는 〈表 16〉에서 보듯이 그동안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법정기한인 1992년 3월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출자규제제도의 시행에 따라 타회사에 대한 과도한 출자가 억제되어 대규모기업집단의 他會社出資比率의 減少(1987년지정 29개 企業集團의 경우 1987년 43.6%에서 1991년 31.8%로 감소)와 平均自己資本比率의 上昇(30大企業集團의 경우 1986년 16.1%에서 1990년 21.4%로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出資限度超過金額의 해소는 타회사 출자감소로 약 25%, 순자산액 증가로 약 75%를 해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출자감소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그만큼 제약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表 11〉의 系列會社持分率 下落에서 보듯이 과거 出資規制는 所有分散에 대해서 다소 간접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으로 出資規制는 所有分散을 위한 政策手段이 아니며 多邊化와 生産集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나. 與信管理制度

그동안 정부는 「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金融通貨運營委員會) 및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施行細則」(銀行監督院)에 근거하여 與信管理制度를 시행해 온 결과, 재벌에 대한 偏重與信의 완화를 통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所有分散과 企業公開를 촉진하는 효과는 크게 없었다. 1987년 이후 與信管理制度의 강화로 〈表 7〉에서 보듯이 은행여신에서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했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特別外貨貸出, 産業合理化貸出 등 여신관리에서 제외된 대출을 포함하면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다.

與信管理制度란 立法化되지 않은 제도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큰 기복을 나타냈으며, 이 때문에 일관성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1991년 6월의 與信管理制度 改編에 따라 株式分散이 잘된 일부 소수기업을 여신관리에서 제외한 조치는 所有分散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多數主力業體에 대한 與信管理의 解除措置는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 所有集中의 차원에서는 〈表 12〉에서 보듯이 30大企業集團의 主力業體 内部持分率は 51.0%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들에 대한 與信管理解除는 이들의 直接金融必要性을 감소시키는 만큼 所有分散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30大企業集團에 대한 總貸出金에서 주

력업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 (1990년 4/4분기 매월말 평균, 여신한도관리 대상 대출금 기준)로서 주력업체에 대한 與信管理의 解除는 사실상 그 효과가 매우 크다¹⁵⁾. 이와 같이 현재 정부는 與信管理制度를 業種專門化와 연계시키고자 하지만 이러한 專門化의 強要 내지는 多邊化의 規制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다. 産業合理化制度

현행 産業合理化制度는 불황산업과 유망유치산업에 대한 産業構造調整支援 차원과 金融機關의 不實債權整理를 위한 不實企業整理 차원의 합리화가 포함된 포괄적인 합리화 규제제도이다. 産業合理化制度는 「工業發展法」과 「租稅減免規制法」의 二元的인 법적 근거를 갖는 제도로서 그 대상, 절차 및 합리화수단이 상이한 제도가 혼재되어 있는데 합리화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세부정책지침으로 「産業合理化支援基準」이 수립·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銀行의 不實企業整理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합리화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個別不實企業整理에 대한 政府의 介入과 支援은 産業構造調整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産業政策方向에도 부합되지 못했다. 특히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에서 財閥企業에 의한 第三者 引受方式은 재벌기업이 확대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과거 부실기업의 정리는 企業의 回生에만 치중했던 점과 第三者 引受가 재벌에 의한 隨意契約으로 이루어진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産業合理化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出資總額制限의 예외를 인정했으며, 改編前의 與信管理制度는 合理化에 따른 기업인수 및 합병관련 대출금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企業投資禁止事項과 自救努力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경쟁력집중을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所有集中과 관련된 制度

가. 企業公開要件

현재 「有價證券上場規程」(證券去來所) 및 「有價證券引受業務에 관한 規程」(證券管理委員會) 등에 의하여 기업공개시 발행주식의 30%만 공개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企業公開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¹⁶⁾. 이러한 기업공개요건에 따르면 家族所有持分이 70%나 되더라도 기업을 공개하여 증시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기업공개요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表 10>에서 볼 수 있듯이 財閥의 企業公開度는 아직도 매우 낮은 실정이며, <表 12>에서 보듯이 공개된 기업의 경우에도 內部持分率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5) 한국은행 보도자료, 「30大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限度管理基準 比率設定」(91-6-11號) 참조.

16) 다만 시장 1부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大株主 1人(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율이 51% 이하이고 少額株主(발행 총주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의 總所有株式數가 유동주식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의 企業公開要件으로는 설립후 5년이상, 納入資本金 20億 원·自己資本金 30億 원 이상, 최근 3년간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실현, 최근 산업연도 수입자본이익률이 15% 이상, 공개전 1년 이내 기간중 특별한 사유 없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된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차원에서는 企業公開의 촉진과 企業公開要件의 강화라는 별도의 모순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所有分散의 전제조건인 企業公開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업공개요건을 더 이상 강화할 수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요건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나. 財閥의 2世 移讓時 相續·贈與稅

相續·贈與稅는 所有分散의 가장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의 경우 時價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제대로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지 못하여 相續·贈與稅의 실효성이 제약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90년의 稅制改編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평가문제는 1990년부터 公示地價 도입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므로 相續財產의 捕捉率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實名制 留保를 보완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인데, 상속재산의 포착률을 제고하고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상속세 신고내용의 公示制度 도입(50億원 이상의 고액상속자), 相續·贈與稅의 시효기간 연장, 事前贈與分の 累積合算期間 연장, 相續稅 회피목적으로 사전처분된 재산의 合算課稅期間 연장, 高額相續人財產의 사후관리, 負債의 사후관리 강화, 公益法人事後管理制度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資本去來를 이용한 상속회피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계열기업간에 財務構造가 건실한 企業(大株主가 父)과 부실한

企業(大株主가 子)이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을 조작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하는 경우 등 企業合併을 이용한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고, 法人이 特定株主의 株式만을 낮은 액면가액으로 有價減資함으로써 減資에 참여하지 않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등 不均衡減資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을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업공개전 과도한 無價增資의 원인이 되고 있는 資產再評價 特例制度를 폐지하였다. 이외에도 相續財產 評價方法을 개선하기 위하여 非上場株式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사한 규모 및 업종의 上場株式 株價와 비교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公示地價에 의하여, 기타 固定資產은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높은 세율 때문에 租稅回避行爲가 유발되지 않도록 稅率構造를 하향조정하고 稅率適用等級은 상향조정하되 계급수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相續·贈與稅의 實效性問題는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보다는 오히려 相續開始資料의 수집불량과 相續財產의 파악 불철저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富의 世襲에 대한 效果的인 규제가 불가능하다. 1989년 相續稅 부과인원은 사망자의 0.7% 수준으로 일본의 4.84%(1980~84년 평균)와 비교할 때 相續開始資料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1989년에 相續財產으로 파악된 것 중 不動產이 74%이고 預金이 3%, 有價證券이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재산의 파악이 불철저한 것을 나타낸다. 또한 과거 삼성그룹

〈表 17. 無議決權優先株 發行現況

(단위: 億원)

	1986	1987	1988	1989	1990
無議決權優先株 發行(A)	20	171	6,325	38,822	5,583
有價增資總計(B)	7,977	16,550	67,206	111,245	25,818
比重(A/B)	0.3%	1.0%	9.4%	35.8%	21.6%

資料 經濟企劃院.

의 경우 同一人·特殊關係人 및 系列會社의 内部持分率이 창업자의 사망을 전후로 56.7% (1987. 4. 1 기준), 50.3% (1989. 4. 1 기준), 53.2% (1991. 4. 1 기준)로 변화했는데, 이는 동 기간중 「오너」가 생존한 여타 재벌과 비교할 때 대동소이한 所有持分率의 변화 추세로서 相續稅를 중심으로 한 현행 소유분산 시책의 實效性이 극히 미약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金融實名制의 不在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철저한 徵稅行政의 일관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無議決權株式 發行制度

無議決權優先株는 普通株에 비하여 우선적인 배당을 보장받는 대신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으로서 商法上 發行株式總數의 1/4 (資本市場育成法上的 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2)로 제한되고 있다. 무의결권우선주는 그동안 기업의 直接 金融調達 확대를 위하여 적극 권장한 결과 〈表 17〉에서 보듯이 1989년의 경우 有價增資總額의 35.8%까지 증가했으나, 1990년 3월부터는 證市安定 등을 위하여 이를 억제한 결과 21.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무의결권우선주의 발행은 大株主의 增資貸

金納入負擔을 경감시키고 有價增資를 촉진하며 직접금융을 원활하게 하고 經營·支配權의 탈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히 企業公開가 촉진되고 資本自由化가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를 經營·支配權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大株主는 無議決權株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無議決權株式 發行이 확대되면 이는 장기적인 의결권지분 하락추세를 저해함으로써 실질적인 所有分散을 가로막게 된다.

라. 大量株式取得의 制限

證券去來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이나 법인이 타회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大量株式取得의 制限은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금지에 관한 규정과 함께 상장법인의 경영권안정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량주식소유의 규제대상은 上場株式에 한하고 無議決權株式는 제외되며, 당해 유가증권이 신규로 상장될 당시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상장당시의 소유비율을 한도로 하여 추가소유가 제한되고, 여타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

3. 金融機關의 役割과 관련된 制度

가. 金融機關의 株式取得制限

현재 銀行과 保險會社 등의 株式取得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銀行法에 따라 株式, 社債, 其他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는 요구불예금의 25%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회사주식의 경우 10%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保險業法에 따라 동일회사주식의 保有限度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회사 總資產의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規制로 인하여 金融機關이 株式取得을 통하여 所有分散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된 실정이며, 그나마 은행과 보험회사는 株式取得·運用의 資本利得을 노리는 短期投資에 치중하고 長期出資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나. 金融機關株式의 保有限制

현재 銀行의 경우 銀行法에 따라 同一人의 株式保有限度가 8%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외국과의 합작투자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지방은행의 경우 同一人 株式所有限度の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保險의 경우에는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하여 1989년부터 15대 재벌의 보험회사 신규참여가 금지되고, 16~30대 재

벌은 보험회사 株式의 50% 미만의 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企業所有·經營構造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向

1. 最近의 政策動向

과거 經濟力集中 및 企業所有·經營構造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정책현황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적으로 일관성있게 대처했다기보다는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졌으며 그나마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상당한 기복을 나타냈다고 평가된다.

1990년에 들어서 정부가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經濟力集中 및 企業所有·經營構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非業務用不動產賣却措置(1990. 5. 8), 與信管理制度의 改編(1991. 6. 1), 現代그룹에 대한 税金追徵(1991. 11) 등 財閥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財閥問題의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7차 5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정부의 최근 정책동향이자 향후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11월 확정발표된 7차 5개년계획은 '企業의 競爭力 強化와 産業組織의 效率化'를 10大 政策課題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企業의 所有集中分散,

〈表 18〉 韓·美·日의 大企業所有·經營構造의 比較

	韓 國	美 國	日 本
形 態	재벌	단일초대기업	기업집단
所 有	특정가족	국민다수	기업상호소유
經 營	특정가족이 주요 사장·임원	경영자지배와 이사회	고용사장 및 임원
特 徵	개인자본주의	경영자자본주의	법인자본주의
背 景	1세대개발과정에서 부족한 기업가·자금동원능력 보완	거대한 증권시장의 존재	전후 재벌의 기업집단화

企業의 專門獨立經營體制 確立誘導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經濟力集中 및 企業所有·經營構造의 問題와 相關된 최근의 政策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7차 5개년계획의 各 部門計劃 및 92년도 經濟運用計劃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附表〉에서는 이러한 모든 政策동향을 총괄·수록하고 있다.

〈附表〉에 수록된 것은 經濟力集中 및 企業所有·經營構造에 關한 政府의 향후 政策 방향을 가늠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財閥 系列企業의 所有分散誘導
- 財閥 系列企業의 所有分散에 있어서 金融機關의 役割增大
- 金融機關의 國民企業化를 위한 所有分散 誘導
- 財閥 系列企業의 專門獨立經營體制 誘導 및 不公正去來行爲 規制強化
- 出資規制制度의 持續的 推進
- 與信管理制度와 業種專門化施策의 持續的 推進
- 關聯施策의 連繫推進과 統計制度 發展

2. 經驗的 證據의 要約과 視角의 整理

Ⅱ, Ⅲ, Ⅳ章에서의 논의가 所有·經營構造의 改善을 위한 政策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의 經驗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先進資本主義 經濟와 우리 경제가 所有·經營構造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좁게는 所有와 經營, 넓게는 經濟力集中의 현재 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유용한 分析資料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선진자본주의 經濟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表 18〉에서와 같이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所有 및 經營構造가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가족에게 所有·支配·經營權이 모두 집중된 재벌의 형태를 유지한 경우는 없다. 또한 所有分散에 따라 經營權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각국의 經濟사회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所有分散은 우리가 분명히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지만, 所有와 經營이 분리될 때 經營權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식의 經營者資本主義, 일본식의 法人資本主義, 혹은 독일식의 金融資本主義 등과 같은 代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實現可能性도 크지 못할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經濟力集中을 生産集中, 業種多邊化, 所有集中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모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관한 視角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論者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筆者는 經濟力集中의 原因과 成果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모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앞서의 論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문제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所有·經營分離 論議의 虛構性

所有分散과 所有·經營의 分離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時間帶(time horizon)를 달리하는 과제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經濟力集中과 관련된 政策課題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특히 所有分散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의 所有權이 憲法으로 보장되는 한 所有分散의 급속한 추진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반면에 所有와 經營의 分離는 所有集中이 심화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현상이나, 현실적으로 所有分散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所有와 經營의 分離는 所有分散이라는 長期課題보다 더욱 오랜 세월을 요하는 '超長期 課題'로 인식되어야 하며, 韓國資本主義의 模型設定이 아직 시기상조의 과제이듯이 所有와 經營의 分離 또한 贊反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며 현안과제가 될 수도 없다.

최근 所有分散 및 所有·經營의 分離에 관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財界와 政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財界는 '主人 있는 經營'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所有·經營의 分離를 반대하며, 이를 토대로 所有分散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것으로서 所有와 經營의 分離는 앞으로 企業成長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미지의 과제일 뿐, 현재로서는 所有集中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나. 企業規模와 生産比重에 관한 視角

<表 19>의 國際比較에서 알 수 있듯이 一般集中度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이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며, 우리 경제가 장차 先進國型으로 발전하더라도 財閥 혹은 大企業의 生産比重은 상당히 안정적인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느 한 기업이 일정한 영역에서 世界的인 大企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生産工場을 大型化하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進入障壁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어 공정한 경쟁여건을 통하여 企業規模가 大型화된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으며 세계적인 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大型化는

〈表 19〉 100大企業集中度 國際比較

	(단위: %)				
	韓國(1989)	日本(1984)	美國(1985)	獨逸(1984)	캐나다(1983)
出荷額	37.2	27.3 ¹⁾	-	39.5	-
附加價值	33.5	-	33.0 ²⁾	24.8	47.1 ²⁾
資 産	39.2	33.0	49.1	-	52.2

註 1) 1980년, 2) 1982년.

資料 Marfels(1988); 한국의 경우 〈表 6〉과 동일.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企業規模의 成長을 제약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業種多邊化에 관한 視角

企業規模와 마찬가지로 營爲業種의 多邊化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업집단의 고유한 의사결정영역이므로 效率성과 利潤을 증대하고 危險을 분산하기 위하여 企業集團 혹은 大企業이 自己資本能力 범위내에서 業務領域을 다각화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업종간 融業化 등이 전개되면 기업집단이 집단내 업종간 相互接續網(interface network)을 형성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한 機動力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므로 업종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企業의 自律에 맡겨야 한다. 문제는 外部資金借入이나 系列그룹내의 循環式 相互出資를 통하여 기업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데에 있는데, 外部借入 등에 의한 무리한 외형확대로 財務構造가 부실화되거나 관련업종 및 계열기업수가 과도하게 확대됨으로써 企業集團의 專門성과 國際競爭力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 현재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

理規定上 타기업출자시 自己資本比率에 따라 유상증자, 보유부동산 매각 등 自救努力을 규정하고 業種專門化를 유도하는 것이나, 公正去來法上 相互出資 또는 出資限度를 규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되는데, 政策 차원에서 問題의 核心은 業種多邊化 혹은 業種專門化에 대하여 成功的인 政府介入이 가능한가인 것이다.

多邊化에 있어서 비록 自律性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나 金融·産業·言論 등의 主要部門間에 財閥의 多邊化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도 金融資本과 産業資本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産業財閥과 金融財閥은 각각 독립적으로 專門化되어야 할 것이다. 言論의 경우에도 言論財閥의 特化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 所有構造에 관한 視角

生産規模와 業種多邊化의 문제와는 달리 현재의 所有集中은 앞서 지적한 대로 국민경제적으로 별 이득이 없으며 그 폐해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經濟力集中問題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의 所有集中

도는 經營權의 安定的 確保를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므로 방지될 수 없으며, 경영권의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모든 기업에 있어서 '主人 있는 經營'이 '主人 없는 經營'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所有主나 家族關聯者의 所有比重을 낮추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높은 주식 점유비율을 계속 유지하고서는 資本規模의 增額이 곤란하게 되어 外部資金借入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분산을 논의함에 있어서 效率性이나 資金調達方式 등과 같은 經濟論理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경제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순수한 경제논리는 分析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手段이나 政策의 選擇에 있어서는 政治經濟的 論理가 추가되어야 하며, 所有分散의 政治經濟學은 결국 이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국민일반의 동질감이 제고되고 경제체제에 대한 신뢰감과 귀속감이 제고된다는 데에 있다. 즉 企業所有分散을 통하여 기업성장결과에 대한 많은 국민의 참여가 가능할 때 企業成長을 촉진하고 自由企業主義를 성숙시킬 수 있는 政治社會的 支持基盤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企業所有가 當代의 노력 없이 고스란히 대대로 世襲化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所有分散을 위하여 어떠한 政策手段을 동원할 것이며,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마. 「그룹」集中經營方式에 관한 視角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차이는 있

으나 대부분이 「그룹」中心의 經營·管理로 개별회사의 專門인 獨立經營體制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總體的 經營效率을 높이기 위한 계열회사간의 協調體制는 개별기업간 독립성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서 系列企業群內의 모든 자금, 인력, 내부거래 등을 종합관리하는 방식은 점차 개별기업별 獨立性과 專門性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業種多邊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政府介入의 成功與否는 미지수이며, 經營構造에 대한 政策的 接近은 매우 제한적이며 신중을 요하는 사안일 것이다.

3. 結論 : 바람직한 政策方向의 摸索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과거의 경제력집중대책과 최근의 정책동향을 살펴볼 때, 우선 과거 出資規制와 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집중대책은 경제력집중의 세가지 상이한 측면인 生産集中, 業種多邊化, 所有集中 가운데에서도 주로 生産集中과 業種多邊化를 규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출자규제와 여신관리에 따라 재벌 계열기업은 타회사출자비율 감소, 자기자본비율의 상승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으며, 여신편중 또한 어느 정도 시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85년 이후 30大企業集團集中度의 감소추세 및 80년대全般에 걸친 100大企業集中度의 감소추세는 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출자규제와 여신관리에 기인하

기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企業數의 增加, 産業底邊의 擴大 및 獨寡占市場의 競爭化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生産集中의 차원에서 출자규제와 여신관리의 효과는 그만큼 平價切下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점은 과거 경제력집중대책의 중점이 生産集中과 業種多邊化의 規制에 있었기 때문에 所有集中이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企業所有의 世襲에 대하여 相續·贈與稅制가 철저히 적용되지 못하였고, 企業公開가 부진한 가운데 所有分散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企業成長에 대한 다수국민의 참여가 제약되었다. 이러한 所有集中의 深化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經濟力集中問題의 核心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산집중과 업종다변화에 대한 규제만이 중시되는 政策選擇의 問題가 지적되어야 한다.

生産集中과 業種多邊化를 규제하는 出資規制와 與信管理의 요체는 기업으로 하여금 '自己能力範圍內的 規模擴大와 多邊化'를 수행하도록 강제함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기능력을 制度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政府失敗의 가능성이 크며, 출자규제의 경우 그동안 출자한도초과금액의 약 3/4이 純資産增加로 해소된 만큼 실효성이 높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최근 개편된 與信管理制度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業種專門化라는 産業政策的 目標과 여신관리를 연계시켰는데, 이러한 誘因體系는 기업이 産業構造調整에 기민하게 대처함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업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資源配分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

며, 무엇보다도 아직도 資金의 超過需要가 상존하는 여건하에서 主力業體에 대한 與信管理解除는 경제력집중대책의 퇴보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業種多邊化에 관한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적으로 부작용이 큰 主要部門間 多邊化 - 즉 金融·産業·言論 등 부문간의 多邊化 - 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財閥이 寡占株主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은행, 증권·단자·보험회사 등의 경우에는 大株主로 참여하고 있어 金融自律化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財閥의 言論媒體所有는 정치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정책동향을 볼 때 향후 정부의 경제력집중대책이 대폭 강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財閥系列企業의 所有分散을 유도하는 시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所有分散이 오랜 기간을 요하는 장기과제임을 인식할 때 향후 정책이 정치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복을 나타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財閥系列企業의 所有分散을 촉진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役割을 증대하고 金融機關의 國民企業化를 위한 소유분산 유도 또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지만, 이러한 정책의 선택 이전에 향후 金融資本과 産業資本間的 어떠한 관계설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所有分散을 유도하는 시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出資規制와 與信管理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生産集中과 業種多邊化를 규제하는 종래의 방식을 止揚하고 향후에는 所有分散 및 金融·産業·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와 연

계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所有分散을 목표로 설정하여 기존의 經濟力集中對策을 再編하여야 한다.

所有·經營의 分離에 관한 논의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經營構造에 관한 政府介入의 타당성이 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經營構造를 정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獨立專門經營體制의 유도는 새로운 政府失敗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마땅하지 않다. 다만, 相互支給保證의 段階的 縮小은 독립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보다는 재벌계열기업 중 限界企業에 대한 退出障壁을 낮춘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

제강화는 경쟁정책 차원에서도 문제시될 이유가 없다.

요컨대 최근 政府의 政策은 經濟力集中의 모든 측면에 관한 規制強化로 해석되므로 이는 所有分散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재고되어야 하며, 企業經營構造에 대한 제약은 향후 韓國資本主義模型의 발전추이를 살펴가면서 결정될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사항은 經濟力集中關聯統計에 관한 정책을 확립하는 일이다. 종래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던 관행은 객관적 사실의 인지조차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만 야기했다. 모든 統計의 公開와 이에 근거한 政策樹立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姜哲圭·崔廷杓·張志祥, 「財閥: 成長의 主役인가, 貪慾의 化身인가」, 經實聯文庫 2, 比峰出版社, 1991.

金俊經, 「金融環境變化와 銀行不實債權 整理方案」, 政策研究資料 91-10, 韓國開發研究院, 1991. 3.

李奎億·李在亨,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研究報告 90-04, 韓國開發研究院, 1990. 6.

林雄基, 「企業所有構造와 資本市場發展」, 韓國信用評價株式會社, 1988.

經濟企劃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1991. 11.

經濟企劃院 外, 「92年度 經濟運用計劃」, 1991. 12. 26.

公正去來委員會, 「第7次 5個年計劃 公正去來部門計劃」, 1991. 12. 27.

商工部, 「第7次 5個年計劃 產業政策部門計劃」, 1991. 12. 20.

韓國信用評價(株), 「30大財閥 財務資料分析集」, 1989.

服部民夫, 「韓國과 日本의 大企業그룹 比較: 所有와 經營을 중심으로」, 李學鍾 外, 「韓國企業의 構造와 戰略」, 1989. 第9章, pp. 233~290.

北原勇, 「現代資本主義における所有と決

- 定」, 岩波書店, 1984.
- 西山忠範, 「支配構造論: 日本資本主義の崩壊」, 文眞堂, 東京, 1980.
- 正木久司, 「株式會社支配論の展開」, 文眞堂, 東京, 1983.
- 東洋經濟, 「企業系列總覽」, 1991.
- Berle, Adolf A. and Gardiner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revised edition, Harcourt, Brace & World, Inc., New York, 1967.
- Herman, Edward S., *Corporate Control, Corporate Power*, A Twentieth Century Fund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Larner, Robert,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200 Largest Nonfinancial Corporations, 1926~1963,"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No. 4, Sep. 1966, pp. 777~787.
- Marfels, Christian, "Aggregate Concentr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anada,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h. 3 in R. S. Khemani, D. M. Shapiro, and W. T. Stanbury (eds.), *Mergers, Corporate Concentration and Power in Canada*,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1988.
- Mueller, Dennis C., *The Corporation: Growth, Diversification and Mergers*, A Volume in Alexis Jacquemin (ed.), *The Theory of the Firm and Industrial Organization Section*,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87.

政策 및 發表日時	主 要 內 容
1.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1991. 11. 經濟企劃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業의 所有集中 分散 : 46.9%의 내부지분율을 장기적으로 경영권안정이 가능한 범위내로 축소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기업의 지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유도 - 공개대상법인의 공개촉진 - 무의결권주식 발행의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육성법의 무의결권주식 발행한도 축소 - 상속·증여세제의 稅政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億 원이상 고액상속자에 대하여 상속재산 사후관리 및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제도 운용 · 合併·增資·減資 등 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행위 정기조사와 고액 자산소유자의 자산변동내용 및 소득금액 등을 전산집중관리 - 금융기관의 기업주식보유 확대와 국민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 이내에서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확대(은행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 ·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상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고 장기주식투자를 유도 · 은행법상 동일한 범위를 公正去來法의 범위와 일치시켜 대주주의 실질적 경영지배 가능성을 배제 ·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지분율한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보험·증권·단체회사의 소유분산 유도 ◇ 企業의 專門獨立經營體制 確立 誘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기업의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동결(1991. 8 이미 조치) 및 향후 보증잔액을 점진 축소 · 비주력기업은 재무구조(자기자본)에 비하여 지급보증규모가 과도한 기업의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신규지급보증제한 후 계열기업간 지급보증제한을 전계열기업에 적용 · 위험도가 높은 신기술개발투자의 경우 지급보증 인정

정책 및 發表日時	主 要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등의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 운용의 강화 · 법인세 조사시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내부거래내역을 철저히 확인
<p>2. 7次 5個年計劃 公正去來部門計劃 (1991. 12. 27, 公正去來委員會)</p>	<p>◇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持續的 推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규제제도의 지속적 추진과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출자한도는 필요시 조정 검토 - 대규모기업집단 특유의 不正去來行爲 類型開發, 감시강화 및 규제 기준 마련 - 經濟力集中抑制 關聯施策의 종합적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규제제도, 여신규제·주력기업집중지원 등 금융정책, 산업정책, 자본시장육성정책 등 관련정책의 연계 추진 · 소유집중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등 관련세제와 기업공개시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 유도 - 경제력집중도에 대한 지정 통계제도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력집중 현황 및 변화추이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공표 · 경제력집중 관련통계의 전산화 추진 - 出資規制制度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연구
<p>3. 7次 5個年計劃 産業政策部門計劃 (1991. 12. 20, 商工部)</p>	<p>◇ 産業組織의 效率性 提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업종전문화 유도 및 비관련다각화 억제 -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소유·경영의 분리 촉진을 위해 기업공개 유도 · 대기업의 비주력업종,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p>4. 92年度經濟運用計劃 (1991. 12. 26, 經濟部處共同)</p>	<p>◇ 企業經營의 效率化 誘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大 系列企業群 소속 미공개기업의 공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기업체부터 추진하고 비공개주력기업 공개시 조달된 자금의 일 정비율은 은행대출금상환에 사용

정책 및 發表日時	主 要 内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互支給保證의 단계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기업의 지급보증잔액 동결을 전체 계열기업으로 확대 · 자기자본에 비하여 지급보증 잔액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계열기업에 대해서 지급보증 만기 도래분 갱신을 제한 · 대상기업별 실태파악후 연차별 지급보증잔액/자기자본 비율 인하계획 수립 - 계열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正去來法上 내부거래 심사기준을 수립·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 철저 · 계열기업간 자금거래의 사후관리 강화 - 金融機關의 所有分散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상 동일인 범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범위와 일치 · 지방은행 대주주지분을 한도를 15%로 설정 - 금융기관 부실채권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손상각 기준의 명확화 등 제도정비